

〈公開세미나 發表要旨〉

遠洋漁業의 特殊性에 關聯된 勞使問題

徐 應 均\*)

- |                              |                       |
|------------------------------|-----------------------|
| 1. 概 要                       | (1) 漁船員의 就業動機賦與 要因 減退 |
| 2. 遠洋漁業의 特殊性                 | (2) 勤勞環境과 中途下船        |
| 3. 遠洋漁業의 特殊性에 緣由하는 勞使關係의 問題點 | (3) 團體協約과 履行          |
|                              | 4. 結 語                |

1. 概 要

現在 遠洋漁業은 排他的인 經濟水域 宣布로 因한 漁場의 制限과 油類代 引上 等 原價上昇의 어려운 興件下에서 75個의 業休가 約 2萬名의 漁船員과 깃가림 賃金制를 根幹으로 한 漁撈契約을 締結, 遠隔된 世界海域에 出漁하여 操業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生産된 漁獲物은 명태 一部를 除外하고는 全物量을 輸出하므로써 國家主要 基幹産業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2. 遠洋漁業의 特殊性

가. 遠洋漁業은 第一次 産業으로서 勞動集約的이며 低加工度 生産業이므로 附加價值 生産額이 낮고 生産能力(生産施設 및 手段) 및 稼動率 보다 漁場條件 및 資源狀況이 生産量에 至大한 影響을 주는 生産構造上의 特性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一般 工産品과는 달리 生産量이 投下勞動量과의 比例關係에만 있지 아니하므로 産業構造的으로 勞動賃金の 支拂源泉이 不安定한 脆弱性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國內 高度成長 産業部門의 賃金の 急上昇은 當業種의 賃金調整에 壓力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國內의 景氣好況과는 別個로 國家에서 國際景氣變動 및 興件에 依據 事業의 成果가 左右되는 即, 國內의 景氣變動과 當 遠洋漁業의 興件 및 景氣變動間에는 乖離가 있으므로 當 遠洋漁業과의 關聯海外 地域의 景氣上昇없이 國內의 景氣好況은 相對的으로 船員誘入을 어렵게 하고 經營收益과 關係없이 一方的으로 賃金調整에 壓力을 加增시키고 逆作用을 하므로써 事實上 當 遠洋漁業은 이 側面에서 본다면 被害産業의 位置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遠洋漁業은 莫大한 船舶資産과 所要資材 및 漁撈經費가 企業主(船舶主)의 管理領

\*) 韓國遠洋漁業協會 專務理事

域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海域에서 船長 以下 編成된 漁船員에게 完全히 一任된 狀態로 管理되고 이들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生産操業이 行하여지므로 船員 賃金形態에 있어서 特殊한 짓가림 賃金制를 採擇하고있다. 即 漁獲物 販賣收入에서 投下된 漁撈經費中 一定項目의 經費를 除한 殘餘金額을 船主와 漁船員間에 一定 比率로 配分하는 計算方式으로 賃金を 算出하는 것으로 操業成果에 比例하여 報酬가 增大하는 能率給 賃金形態라 할 것이다. 近間에는 本來의 짓가림 賃金制에다 一定額의 月固定給을 支給保障하고 別途로 漁船員의 給食費 等을 前記 項目 經費에서 除外시키는 制度補完으로 發展된 修正 짓가림 賃金制를 採擇하므로써 當業種의 生態的인 特性에서 오는 特殊賃金形態를 엮을 수 있다. 以外에도 一定한 事業完了에 必要한 相當한 期間을 遠洋의 海上에서 滯留하면서 간단없이 作業을 遂行하여야 하는 特殊勤勞環境 等 他産業과 確然히 區分되는 特殊性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 遠洋漁業의 特殊性에서 緣由하는 勞使關係의 問題點

#### (1) 漁船員의 就業動機賦與 要因 減退

當初 漁船員은 剩餘人力資源과 國內對比 賃金水準의 현격한 優位 및 海外進出의 機會賦與 等으로 因한 人氣職種으로 供給이 需要를 넘겼으나 近來에와서는 國內産業의 急激한 發展으로 雇傭이 增大되고 國內賃金이 大幅的으로 向上됨으로써 遠洋漁船員의 賃金이 比較優位의 位置를 漸次 喪失해가고 있다 할 것이며, 特히 짓가림 賃金制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于先 提示되고 있는 固定給만을 他業種의 賃金과 對比測定하는 短見으로 말미암아 既往의 就業動機賦與 要因이 退色되므로써 漁船員의 資質低下와 希望漁船員의 減少現象을 示顯하고 있다 할 것이다.

遠洋漁業의 經營生態的 特性에서 짓가림 賃金制는 現時點에서 不可避하며 固定給은 同賃金制의 本質을 害하지 않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므로 이의 上向 調整에는 스스로의 限界가 있다 할 것이므로 當業界의 賃金特性을 주지 시킴이 重要하며 漁船員의 確保와 完全期間操業 等은 當業界의 새로운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 (2) 勤勞環境과 中途下船

遠洋漁船員의 作業場은 遠隔海域에 位置하고 一定의 期待操業成果 達成을 爲하여 漁船員은 不得已 相當한 長期間의 海外 滯留操業이 不可避하게 되며, 또한 漁撈作業은 強度가 높은 勞動力을 要求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一定의 限定된 生活圈內에서 生活이 繼續 營爲되므로 이에서 派生되는 倦怠와 思考 또는 判斷의 基準喪失로 諸般 狀況에 對한 올바른 理解가 缺如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善良한 漁船員이 不良한 漁船員의 煽動에 감염되어 怠業 및 亂動을 誘發, 不可避하게 이들을 強制로 中途下船시켜야 하는가 하면 不法 및 契約違反하여 無斷으로 中途下船할 素地가 恒時 內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遠洋漁業의 特殊性에 關聯된 勞使問題

따라서 遠洋漁業은 企業主의 直接的인 監督을 벗어나서 獨自的으로 一定의 操業成就를 爲하여 一定의 人員에 의해서 遂行되는 集團操業이므로 一部人員의 中途下船은 莫大한 操業被害를 招來케 하고 이는 企業自體의 經營收支에 絶對的인 作用을 함으로써 遠洋漁業의 存立과 直接的인 相關關係에 있다할 것이며, 漁船員의 交替充員은 操業場이 海外에 遠隔되어 있으므로 因하여 彈力性이 缺如되어 있어 隨時 發生하는 中途下船에 對한 適期補充이 어려우며 또한 船空便에 依한 交替가 大部分이므로 이에 所要되는 費用 負擔이 莫重한 뿐 아니라 이는 經營의 浪費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3) 團體協約과 履行

本來 勞動組合은 勤勞者가 自主的으로 團結한 組織體로서 組合員은 當該 組合規約의 拘束力을 받아야 하므로 事業者와 漁船員의 組織團體인 勞動組合間에 締結한 團體協約은 組合員인 漁船員의 總意가 反映된 結晶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漁船員은 同協約을 誠實히 遵守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이를 船員法 第31條(勤勞條件의 遵守)에서 船員과 船舶所有者는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乘船契約을 包含한다)을 遵守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明白히 하고 있다. 團體協約에서 規定한 事項 以外에도 勞組의 意思는 漁船員은 勞組를 通하여 勞使에 關한 意思가 反映되어야 하는 勞組의 根本的인 組織體制의 本質은 如何한 與件下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함에도 近來에 政府의 行政指導를 誤解 및 또는 惡用하여 一部 沒知覺한 不良 船員이 不順하게 意圖的으로 基本的인 勞使協助體制(團體交渉)를 無視하고 直接的으로 當局에 陳情 또는 무고 등으로 勤勞風土를 混亂시키는 惡習이 만연되므로서 善良한 漁船員의 勤勞意慾을 低下시키고 團體協約 및 漁撈契約을 違反하여 無斷 中途下船하는 漁船員이 增加하고 있음은 注目할 事項이라 하겠다. 이는 法과 社會正義 實現 및 勞使道義 回復을 爲하여 嚴格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勤勞條件의 改善은 當該産業의 實情을 감안하여 漸進的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無理없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며 勞使協議로 締結된 團體協約은 船主는 勿論 漁船員도 充實히 履行하는 勤勞秩序 確立이 새로운 局面에서 檢討되어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4. 結 語

漁洋漁業은 遠隔된 國外海域에서 이루어지는 勞動集約的인 一次産業으로 附加價值生産性의 上昇率이 相對的으로 낮으며 따라서 支拂能力의 向上에 스스로 制限이 있으므로 勤勞條件의 核心인 賃金改善은 國內高成長 産業部門의 賃金上昇率을 直線的으로 따를 수 없음은 必然的인 事實이다.

그러므로 漁撈作業은 強度가 높은 勞動力을 要求하나 反面에 下級船員은 크게 技術을 要하지 않는 單純勞動이므로 當業種의 性質 및 生態에서 緣由하는 것가림 賃金制의 本質을 傷

## 수 산 경 영 문 집

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勞動水準에 알맞는 學力과 資質所有者에게 相當하는 賃金保障으로서 漸進的으로 勤勞條件을 改善하는 政府指導 方向이 期待되고 또한 事故 船員(中途下船)에 對한 當局의 嚴格한 規制로서 勞使間의 道義를 回復시키는 指導方向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事業主로서는 보다 船員處遇改善에 經營의 重點을 두는 誠意있는 姿勢轉換이 要求되며 勞組는 組合員의 意思集約과 일단 確定된 勞使協助의 基準을 일사불란하게 實行할 수 있는 強力한 指導力과 自体性을 갖일 수 있도록 組織化가 時急하다고 할 것이다.